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한시기구의 폐지, 여유기구제의 도입 및 재난안전관리전담기구 설치 등 직제개편과 주택가격평가, 일제강점동원 관련 및 수질오염 총량제 등 신설 업무 처리를 위한 인력 보강을 위하여 우리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정원의 총수 691명을 70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76명을 692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직급별(일반직) 증원안 : 총 16명

- 5급 : 39명 ⇒ 40명 ▷ 증1명
- 7급 : 169명 ⇒ 174명 ▷ 증5명
- 8급 : 180명 ⇒ 188명 ▷ 증8명
- 9급 : 78명 ⇒ 80명 ▷ 증2명

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별표를 신설함(안 제3조)

다.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4조)

라. 일제강점동원 관련 증원되는 구본청의 정원중 일반직 8급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증원에 따른 인건비 확보 필요
 - ▷ 불임 인건비 비용소요 추계서 참조

4. 검토내용

- 본 개정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새기구인 재난관리과 신설과 행자부 지침에 의한 신설업무(주택가격평가, 일제강점동원 관련업무, 수질오염 총량제등)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승인받아 우리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위에 제시된 주요골자와 같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검토결과 대통령령 및 행자부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05. 1. 1부터 각종 법률 및 조례를 제·개정 할 때 제명을 띠어쓰기로 표기하도록 법제처의 지시가 있었음에 따라 금번 개정되는 조례 역시 그 제명 및 기타 지시된 사항을 개정조례에 반영해야 되는데 본 개정안에도 이 사항이 잘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개정조례마다 일일이 표시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은 다같이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인데 그 방안으로 법제처의 띠어쓰기 시행안내 내용을 조례로 제정 그 조례에 따라 다른 각종 조례 및 규칙의 제명 등이 동시에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며, 그 예로 95. 1. 12 조례316호로 공포된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를 볼 수 있는데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하구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중 “부산직할시사하구”를 “부산광역시사하구”로 하는 등 “직할시”로 되어있는 문구는 전부 “광역시”로 고치도록 하는 사항을 조문 없이 한 문장으로 제정하였던 것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번 사항 역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집행부에 제안하니, 상급 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하다면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2005. 3.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성